

#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강병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92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2. 20.

발의자 : 강병원 · 송옥주 · 김영호

윤관석 · 추미애 · 정성호

정춘숙 · 김정우 · 문진국

박재호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5항제5호(대민 기상상담시설 운영 및 관리)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(이하 기술원)이 대민 기상상담시설(기상콜센터)을 운영,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현재 기술원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상콜센터를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하고 그 관리의 주체를 2018년부터 기상청으로 이관하고자 함. 이는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원 비핵심 업무인 기상콜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기술원 본연의 업무인 ‘기상산업 진흥’에 집중하여 콜센터 운영경험이 축적돼 있는 민간부문의 상호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과 민간 고용시장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대민 기상상담시설 운영·관리조항을 삭제함(제17조제5항제5호).

법률 제 호

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5항제5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)</p> <p>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<u>5. 대민(對民) 기상상담시설 운영·관리</u></p> <p>6. · 7. (생 략)</p> <p>⑥ ~ ⑧ (생 략)</p>	<p>제17조(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)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6. ·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~ ⑧ (현행과 같음)</p>